서울 제물포 터널 매연 배출구 이전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제 출 자 : 한병기 외 4,399명

나. 소개의원 : 김경자 의원

다. 청원번호 : 제 43 호

라. 제출일자 : 2016.5.31.

마. 회부일자 : 2016.6.2.

2. 청원요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한 서울제물포터널의 매연배출구가 원래 계획과 달리 주거지역인 목동5단지와 트윈빌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및 유해공기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기본권, 생존권, 환경권과 민법에 명기된 정온권, 소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인근주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수 있도록 주거지역이 오염원(배출구)으로부터 직접 영향권(거리 200미터)을 벗어난 위치로 매연배출구를 이전해줄 것을 요청함.

3. 주요내용

○ 목동5단지와 목동트윈빌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제물포터널의 지하 약 70m에서 지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공기정화시 설#1의 위치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접영향권(200m)을 벗어 난 위치로 이전을 요청함.

4. 청원소개의견 요지(소개의원: 김경자 의원)

- 본 청원은 주거지역인 목동5단지와 트윈빌에 인접하게 설치하고 있는 서울제물포터널 매연배출구 위치를 해당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이전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공기정화시설을 확충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특히, 청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제물포터널의 매연배출구에서 발생되는 공기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및 유해공기로서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기본권, 생존권, 환경권과 민법에 명기된 정온권, 소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인근주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이 오염원(배출구)으로부터 직접 영향권(거리 200미터)을 벗어난 위치로 매연배출구의 이전이 절실히 필요함.
- 또한, 서울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민간투자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현 위치에 매연배출구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과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제물포터널 매연배출구를 해당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당초 설계했던 위치로 이전하고, 공기정화 시설을 확충하도록 요구하는 동 청원에 대해서 서울시의 적극 적인 검토와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여의도~신월IC)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터널(지하 약70m)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공기정화시설#1의 배출구가 목동트윈빌(74m 이격), 목동5단지(118m 이격)와 근접하므로 주민 건강을 위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이상 이격을 요청하는 사안임.([그림 1]. [그림 2]참조)



[그림 1]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및 공기정화시설 위치



[그림 2] 환기탑 이격거리



[그림 3] 공기정화시설 지하배치도

- 현재 추진 중인 공기정화시설 배출구 위치선정의 추진경위를 살펴 보면, 당초 민간투자 제안 당시('11.06) 공기정화시설#1의 위치 를 [그림 1]의 홈플러스 옆 공영주차장에 계획하였으나,
- 양천구청의 상업용지 매각예정 지역으로 용지보상비가 과다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여의도방향으로 약 250m 이동 목동아이스링 크 옆 공영주차장 녹지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표 1] 공기정화시설#1 위치선정 추진경위

'11.06.16.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기본설계) → 홈플러스 옆 공영주차장

'11.06.16. ~ '13.04. : 목동 공영주차장 녹지공간 설치관련 관계기관(양천구) 협의

- 양천구에서 서울시에게 홈플러스 공영주차장 매입요청(1,500억원)

'13.05.02.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열람공고 → 목동운동장 녹지대

'13.06.1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신월2동 주민센터)

'14.11.24.: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목동 청소년 수련관)

'15.04.20.: 실시계획승인신청

'15.09.17. : 실시계획승인

'15.10.08.: 양천구 주민 설명회(목동 청소년 수련관)

- 이와 같이 공기정화시설 배출구의 위치가 최초 계획된 위치가 아 닌 청원인들의 거주지 인근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근 황사 등 미 세먼지¹)에 대한 개개인의 건강관리 의식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과, 국가적으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오염원 최소화 노력이 사 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 청원인들이 본 터널에서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위협 및 주민의 기본권·생존권·환경권 등의 침해가 우려되어 배출구 이전을 요구하는 본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¹⁾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 : 400~799µg/m³

- 한편, 서울시는 공기정화시설#1의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동의 를 위한 주민설명회('13.6, '15.10)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14.11)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시행하였고,
- 시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개통 후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 결과 공기정화시설#1 위치의 미세먼지는 $43\mu g/m^3$ 으로 환경기준 $100\mu g/m^3$ 2)미만이고, 이산화질소(NO₂) 역시 0.026ppm으로 예측되어 환경기준 0.06ppm³⁾미만으로 대기 오염 분석결과는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시는 터널 입·출구 민원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전기집진시설(터널 시·종점부, 공기정화시설#1, 2) 4개소를 설치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본 터널의 통행대상 차량을 소형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전 1시~오전 5시까지 통행을 금지 시키고 터널 내부 점검 및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 매연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설명임.
- 서울시가 [그림 4]와 같이 청원인들의 요구안을 비롯하여 몇 가 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 현재 공기정화시설#1 공사의 진행현황은 수직구(직경15m)를 95m(토사28m+암반67m)깊이로 굴착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시트파일 근입을 완료하고, 원형 띠장을 설치하면서 약 10m 정도를 굴착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현재로서 위치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²⁾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일:2015.1.1]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³⁾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일반보고서 제5편 실시설계 제13장 기계설비설계 13.2.7 환경영향예 측 V-609



검토안		청원인(안)	A(안)	B(안)
개 요		■ 안양천(국가하천) 제방 이용 ■ 배기구 덕트 BOX 연장 523m	■목동운동장 주차장 부지 이용 ■배기구 덕트 BOX 연장 254m	■ 아이스링크와 야구장 사이 녹지대 이용 ■ 배기구 덕트 BOX 연장 343m
민 원		■약 500m 이격(증 426m) (기존 74m → 500m, 목동트윈빌 기준)	■ 247m 이격(증 173m) (기존 <u>74m → 247m,</u> 목동트윈빌 기준) ■추가 위치조정 민원 가능성 있음	■ 311m 이격(증 237m) (기존 74m → 311m, 목동트윈빌 기준) ■추가 위치조정 민원 가능성 있음
관계기관 협의		■국가하천으로 국토교통부 협의 불가 ■양천구청과 부지매입 협의 필요	■ 양천구청과 부지매입비용 협의 필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점용 협의 필요	■ 양천구청과 부지매입비용 협의 필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점용 협의 필요
사 업 비	사업비	증 217.5억원	증 162.8억원	증 122.1억원
	공사비	107.8억원	53.1억원	72.4억원
	보상비	109.7억원	109.7억원	49.7억원

[그림 4] 공기정화시설#1 배출구 위치 조정 방안



[그림 5] 공기정화시설#1 수직구 굴착 현황('16.6현재)

- 그리고, 배기구 관로를 추가하여 이격 시키는 방안은, 부지 사용에 따른 양천구와의 매입협의,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사용 반대, 사업비 증가(약120~210억원) 등으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증액하거나 도로 사용료를 인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후속 진행 중인서부간선도로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설명과 입장만으로는 청원인들의 불안감 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서울시는 현재까지 논의된 안 이외에도 배출구의 방향을 현행 상 향식 배출방식에서 아파트 반대방향인 환경관리센터 방향의 횡방 향 배출방식으로 전환하여 배출가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설계 단계에서 배기가스로 인한 발암영향검토4)가 여의도 쪽 7개 지점에서만 검토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기정화시설#1, 2 주변 에 대해서도 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⁴⁾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일반보고서 제5편 실시설계 제13장 기계설비설계 13.2.7 환경영향예 측 2)발암 영향 검토 V-610